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자, 수험생, 일반인 등을 위해 휴관일을 줄여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휴관일인 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을 줄여 개방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나. 도서관의 휴관일을 줄여 개방토록 하는 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
2. 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휴관일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개관) ----- ----- ----- ----- -----
1. 「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1. 「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
2. <u>정기휴관일</u>	2. <u>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 휴관일</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서관 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을 축소 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인원 충원 및 청사관리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3. 비용추계 요약

● **소요예산 : 184,145천원**

○ 산출내역

연 간 운영비 : **184,145천원**

⇒ 비정규직 사서 1명, 청사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

○ 연간 운영비 산출근거(세부내역 별첨)

구분	소요예산(천원)		추가소요예산	비 고
	현행	정기휴관일에 열람실 개방		
비정규직 사서 인건비(열람지도)	38,924	58,386	19,462	1명 증
청사관리 용역비	1,080,000	1,206,000	126,000	
공공요금 등	266,400	305,083	38,683	
계	1,385,324	1,569,469	184,145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재 병 의원

● 연간 운영비 세부산출근거

구분	소요예산(원)		추가 소요예산
	현행	도서관 개방	
비정규직 사서 인건비 (열람지도)	-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액(1명) : 2,134,640원×12월=25,615,680원 - 연차수당 = 790,000원 - 재해보험 = 934,000원 - 기간제근로자(1명) : 10,584,000원×1명=10,584,000원 - 4대보험 : 1,000,000원	- 19,461,840원×3명=58,385,520원	1명 증
소계	38,923,680원(2명)	58,385,520원(3명)	19,461,840
청사관리 용역비	- 청사관리(300일) : 90,000,000원×12월=1,080,000,000	- 청사관리 용역비 : 1,206,000,000(335일) 산출식: 기존 1일단가 : 1,080,000,000÷300 = 3,600,000원 추가일수 : 3,600,000×35일 = 126,000,000원	126,000,000
공공요금 등	266,400,000원 (2010년 기준액)	305,082,740원	38,682,740
계	1,385,323,680원	1,569,468,260원	184,144,580